##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9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이원택・양경숙・강득구

주철현 • 김종민 • 윤재갑

양정숙 · 장경태 · 민형배

김두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·자연장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, 유사 시설인 국립묘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 보전산지 내 국립묘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.

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곳으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, 법적 근거가 없어 보전 산지 내 설치 가능여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9호).

법률 제 호

###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9호 중 "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)	제12조(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)
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	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	
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	
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	
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</u> 에	9.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
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
한 묘지・화장시설・봉안시설	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
•자연장지 시설의 설치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10. ~ 16. (생 략)	10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